

의안번호	2207217
의 퇴 인	송석준의원
회 답 일	2025.1.8.
추계번호	25E0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세액공제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1,478억원(연평균 △3,8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혼인세액공제 확대 (안 제92조)	-	-3,550	-3,550	-4,377	-	-11,478	-3,82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혼인세액공제 확대 - (현행) 2024.1.1.~2026.12.31.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 (개정안) 2025.1.1.~2027.12.31.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부칙에 의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 부칙에 따라, 동 법 시행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에 따라, 2026년 신고분(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가 이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 혼인신고자 중 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22년 기준 성별·연령별 확정인구대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중복자 제외) 신고자 비율을 따른다고 전제
 - 최근 3년 평균 혼인건수가 향후 2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 소득세 신고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22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의 성별·연령별 자료를 따른다고 전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추정

□ (현황) 2022년 확정인구 5,167만명 중 근로소득세 신고자 약 2,053만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약 1,028만명, 중복자 약 472만명 임

- 성별·연령별 전체 확정인구 대비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비중을 활용하여 혼인신고자 중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을 추정

[표 2] 확정인구,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2022년 기준

(단위: 만명, %)

	확정인구 (A)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B)	근소신고자 중 중복자 (C)	순수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D=B-C)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E)
합계	5,167.3	2,052.9	472.5	1,580.4	1,027.5
남성	2,581.9	1,134.2	267.7	866.5	573.6
30세 미만	779.1	187.6	35.2	152.4	58.9
30세 이상	360.5	262.0	50.7	211.3	90.7
40세 이상	412.9	272.7	57.5	215.2	122.0
50세 이상	432.6	241.7	55.7	186.0	136.3
60세 이상	352.1	136.0	58.1	77.9	128.7
70세 이상	244.7	34.3	10.6	23.7	37.1
여성	2,585.4	918.7	199.9	718.8	440.7
30세 미만	717.9	193.3	40.6	152.6	60.9
30세 이상	326.7	194.2	39.8	154.4	71.7
40세 이상	396.8	204.2	43.3	160.8	96.3
50세 이상	427.7	199.3	45.4	153.9	112.1
60세 이상	369.1	107.2	26.9	80.2	78.0
70세 이상	347.1	20.5	3.7	16.8	21.7
합계	100.0	39.7	9.1	30.6	19.9
남성	100.0	43.9	10.4	33.6	22.2
30세 미만	100.0	24.1	4.5	19.6	7.6
30세 이상	100.0	72.7	14.1	58.6	25.1
40세 이상	100.0	66.0	13.9	52.1	29.5
50세 이상	100.0	55.9	12.9	43.0	31.5
60세 이상	100.0	38.6	16.5	22.1	36.6
70세 이상	100.0	14.0	4.3	9.7	15.2
여성	100.0	35.5	7.7	27.8	17.0
30세 미만	100.0	26.9	5.7	21.3	8.5
30세 이상	100.0	59.4	12.2	47.2	21.9
40세 이상	100.0	51.4	10.9	40.5	24.3
50세 이상	100.0	46.6	10.6	36.0	26.2
60세 이상	100.0	29.0	7.3	21.7	21.1
70세 이상	100.0	5.9	1.1	4.9	6.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12.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2023.12.

-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수 추정) 혼인신고자 추정치에 2022년 기준 성별·연령별 확정인구대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중복자 제외) 신고자 비율 및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추정
- 최근 3년 평균 혼인건수가 향후 2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표 3]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 수 추정, 2022년 기준

(단위: 만명)

	전체 혼인 건수 (21~23년 평균) (가)	혼인신고자 중		근로소득 과세자 비중 (라)	종합소득 과세자 비중 (마)	혼인신고자 중	
		근로소득 신고인원 추정치 ¹⁾ (나) ²⁾	종합소득 신고인원 추정치 ¹⁾ (다) ³⁾			근로소득 과세인원 추정치 ¹⁾ (바=나×라)	종합소득 과세인원 추정치 ¹⁾ (사=다×마)
남성	19.3	9.0	4.3	73.8	77.5	6.6	3.4
30세 미만	4.2	0.8	0.3	52.3	65.2	0.4	0.2
30세 이상	10.6	6.2	2.7	77.9	76.3	4.8	2.0
40세 이상	2.5	1.3	0.7	81.2	76.4	1.1	0.6
50세 이상	1.2	0.5	0.4	82.2	79.1	0.4	0.3
60세 이상	0.5	0.1	0.2	70.7	82.9	0.1	0.2
70세 이상	0.2	0.0	0.0	55.3	78.2	0.0	0.0
여성	19.3	6.9	3.3	57.2	70.1	3.9	2.3
30세 미만	7.0	1.5	0.6	48.5	60.2	0.7	0.4
30세 이상	8.9	4.2	2.0	62.9	69.2	2.7	1.4
40세 이상	1.8	0.7	0.4	62.5	69.4	0.5	0.3
50세 이상	1.0	0.4	0.3	60.9	72.4	0.2	0.2
60세 이상	0.4	0.1	0.1	50.7	74.4	0.0	0.1
70세 이상	0.1	0.0	0.0	32.2	76.2	0.0	0.0

주: 1)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세 중복신고 인원 제외

2) 근로소득 신고인원 추정치는 전체혼인건수(가)에 앞의 [표 2]의 D열을 곱해서 추정

3) 종합소득 신고인원 추정치는 전체혼인건수(가)에 앞의 [표 2]의 E열을 곱해서 추정

나. 총 세수효과추정

- (총 세수효과) 최근 3년 평균 성별·연령별 혼인건수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자수를 추정하고 면세자를 제외한 후, 이들 각각이 2025~2026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1인당 250만원, 2027년에는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추계
- 현행 제도는 2024~2026년 귀속 연도에 대해서 3년간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동 개정안은 2025~2027년 귀속 연도에 대해 3년간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
 - 그 결과 동 개정안에 따를 경우 1인당 세액공제 확대액은 2025~2026년 귀속 연도에 대해서는 250만원, 2027년 귀속연도는 1인당 300만원으로 추계
 - 세액공제액과 면세자 제외한 소득세 신고자 대상으로 한 1인당 결정세액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1인당 세수효과로 하여 추정

[표 4] 혼인세액공제 확대(1인당 250만원 공제액 가정시)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2022년 기준
(단위: 만명, 백만원)

	혼인신고자 중		1인당 결정세액 (면세자 제외)		총 세수효과	
	근소세 과세인원 추정치 ¹⁾ (A)	중소세 과세인원 추정치 (B)	근로소득세 (C)	종합소득세 (D)	근로소득세 (E=A×min(2.5,C-0.5))	종합소득세 (F=B×min(2.5,D-0.5))
합계	-	-	-	-	235,440	119,591
남성	6.6	3.4	5.63	8.43	164,486	79,242
30세 미만	0.4	0.2	1.37	1.41	3,733	1,888
30세 이상	4.8	2.0	3.54	4.01	120,653	50,702
40세 이상	1.1	0.6	6.53	9.05	26,829	14,312
50세 이상	0.4	0.3	8.84	11.35	10,909	7,692
60세 이상	0.1	0.2	5.65	8.97	2,119	4,107
70세 이상	0.0	0.0	6.02	13.44	244	539
여성	3.9	2.3	2.28	3.30	70,954	40,349
30세 미만	0.7	0.4	1.00	0.94	3,618	1,600
30세 이상	2.7	1.4	2.42	2.33	51,113	24,812
40세 이상	0.5	0.3	3.21	3.79	11,255	7,483
50세 이상	0.2	0.2	2.53	4.13	4,557	4,857
60세 이상	0.0	0.1	1.45	3.47	394	1,483
70세 이상	0.0	0.0	1.66	4.74	17	115

주: 1)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세 중복신고 인원 제외

[표 5] 혼인세액공제 확대(1인당 300만원 공제액 가정시)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2022년 기준
(단위: 만명, 백만원)

	혼인신고자 중		1인당 결정세액 (면세자 제외)		총 세수효과	
	근소세 과세인원 추정치 ¹⁾ (A)	중소세 과세인원 추정치 (B)	근로소득세 (C)	종합소득세 (D)	근로소득세 (E=A×min(3,C)) (F=B×min(3,D))	종합소득세
합계	-	-	-	-	290,240	147,478
남성	6.6	3.4	5.63	8.43	198,781	95,747
30세 미만	0.4	0.2	1.37	1.41	5,877	2,923
30세 이상	4.8	2.0	3.54	4.01	144,784	60,843
40세 이상	1.1	0.6	6.53	9.05	32,195	17,175
50세 이상	0.4	0.3	8.84	11.35	13,090	9,231
60세 이상	0.1	0.2	5.65	8.97	2,543	4,928
70세 이상	0.0	0.0	6.02	13.44	292	647
여성	3.9	2.3	2.28	3.30	91,460	51,731
30세 미만	0.7	0.4	1.00	0.94	7,249	3,399
30세 이상	2.7	1.4	2.42	2.33	64,399	31,607
40세 이상	0.5	0.3	3.21	3.79	13,506	8,980
50세 이상	0.2	0.2	2.53	4.13	5,679	5,828
60세 이상	0.0	0.1	1.45	3.47	602	1,779
70세 이상	0.0	0.0	1.66	4.74	25	138

주: 1)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세 중복신고 인원 제외

4. 세수효과 요약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혼인세액공제를 확대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1,478억원(연평균 △3,8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합계	-3,550	-3,550	-4,377	-	-	-11,478	-3,826
근로소득세	-2,354	-2,354	-2,902	-	-	-7,611	-2,537
종합소득세	-1,196	-1,196	-1,475	-	-	-3,867	-1,289

- (징수 기준) 소득세 세목별로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5~2029년 동안 총 1조 1,478억원(연평균 △3,8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모두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가 이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표 7]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합계	-	-3,550	-3,550	-4,377	-	-11,478	-3,826
근로소득세	-	-2,354	-2,354	-2,902	-	-7,611	-2,537
종합소득세	-	-1,196	-1,196	-1,475	-	-3,867	-1,28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